



제 2019-157호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방지에 관한 통지’ 발표

북경사무소

■ 현황

- 최근 국가신문출판서에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방지에 관한 통지(关于防止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총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내용

- 온라인 게임 아이디 실명등록제도 도입: 현재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실명등록방식은 핸드폰 번호, 위챗 번호, 신분증 정보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됨. 하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핸드폰 번호, 위챗 번호로 게임아이디를 등록하고 있어서 미성년자 관리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기 힘든 상황임. 따라서 ‘통지’는 실명등록을 강화할 것이며, 모든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정보를 사용해서 게임아이디를 등록해야 함
-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 엄격한 통제: 매일 22시부터 다음날 8시 까지 미성년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법정공휴일에는 총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평일에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성년자 상대로 한 유료서비스 규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를 규제해 나갈 것이며, 온라인 게임 기업은 만 8세 이하의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동일한 게임 기업이 제공하는 게임유료서비스의 경우 8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용자의 경우, 1회 충전금액이 50위안(한화 약 8,3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충전금액의 합계가 200위안(한화 약 33,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6세 이상 미성년자 이용자의 경우 1회 충전금액은 100위안(한화 약 16,6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충전금액의 합계가 400위안(한화 약 66,4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게임업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 위의 사항에 위반한 정황이 엄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영업허가증을 말소함
- 게임이용연령표시제도의 도입예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사회 각계의 책임 강화: 학부모와 학교 등 사회각계의 미성년자 보호책임의 이행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며, 미성년자가 정확한 온라인 게임 소비과과 행위습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임

■ 평가

- 중국은 최근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강도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제 동향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

- 신화망(新华网)

-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11/05/c_1125194322.htm